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종성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2217

발의연월일: 2020. 7. 21.

발 의 자:이종성・임이자・김용판

정운천 · 김승수 · 배현진

안병길 · 김형동 · 김석기

김미애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공연장운영자는 화재나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관할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 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고, 화재 등 재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의 발생 시 관람자가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피난 절차 등을 공연 시작 전 관람자에게 주지시키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노약자·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관람자의 경우 화재 및 재난에 대한 취약성이 매우 높으며 위기대처능력이 일반인보다 2배이상 떨어짐에도, 공연장운영자가 수립하는 재해대처계획에서 이를 고려하지 않고 작성되어 있어 재해약자인 노약자·장애인들이 문화생활을 안전하게 즐기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공연장운영자는 노약자・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관람자의

피난 계획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, 공연 시작 전 관람자에게 주지하도록 되어 있는 피난안내 내용에 노약자·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관람자 피난 방법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노약자·장애인 등의 관람 안전을 증진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(안 제11조제5항 및 제11조의5제1항).

법률 제 호

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

공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제5항 중 "안전교육에 관한 사항"을 "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및 노약자·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관람자의 피난 계획"으로 한다.

제11조의5제1항 중 "피난 절차"를 "피난 절차, 노약자·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관람자의 피난 방법"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재해대처계획 수립에 관한 적용례) 제11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연장운영자가 신고하는 재해대처계획부터 적용 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혅 행 개 정 아 제11조(재해예방조치) ① ~ ④ 제11조(재해예방조치) ① ~ ④ (생 략) (현행과 같음)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재 해대처계획에는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4까지에 해당하는 안 전관리비, 안전관리조직, 안전 교육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교육에 관한 사항 및 노약자・ 야 하다.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관람 자의 피난 계획----⑥ (생략) ⑥ (현행과 같음) 제11조의5(피난안내) ① 공연장운 제11조의5(피난안내) ① ----영자는 화재 등 재해나 그 밖 의 위급한 상황의 발생 시 관 람자가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 도록 공연장에 피난계단 · 피난 통로, 피난설비 등이 표시되어 있는 피난안내도를 갖추어 두 거나 피난 절차, 그 밖에 비상 --피난 절차, 노약자·장애인 시에 대비하기 위하여 관람자 등 거동이 불편한 관람자의 피 가 알고 있어야 할 사항을 공 난 방법-----연 시작 전 관람자에게 주지시 켜야 한다.
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